

FPSB INTERNATIONAL KOREA

CFP® 인증 가이드

Version 1.0 June 2026

목차

서론	3
CFP 상표(Marks)	3
1 CFP 인증	4
1.1 승인 교육 프로그램	4
1.2 CFP 자격 시험	6
1.2.1 자격 시험 응시 요건	6
1.2.2 시험 형식	6
1.2.3 시험 결과	6
1.2.4 시험 취소 정책	7
1.2.5 CFP 자격시험 유효기간 제한	7
1.3 CFP 인증을 위한 실무 경력 요건	7
1.3.1 일반 원칙	7
1.3.2 실무 경력 요건	7
1.4 CFP® 인증을 위한 윤리 요건	9
1.4.1 FPSB International Korea 의 윤리 및 전문 책임 강령	9
1.4.2 재무설계 실무 기준	10
1.5 국제 상호인정	10
2 신청 절차	10
2.1 신청 절차	10
2.2 CFP 인증을 위한 윤리 선언 및 조건 동의	11
2.3 디지털 인증서 및 배지	11
2.4 시험 합격 후 CFP® 인증 신청	12
3 CFP 자격 유지	12
3.1 갱신 요건	12
3.1.1 계속교육(CE) 시간	12
3.2 갱신 절차	13
3.3 인증 갱신 실패	13
3.3.1 자격회복	14
3.3.2 자격 휴면 제도	15
4 징계 절차	15
5 차별 금지	16
6 인증 결정에 대한 불만 및 항소	16
7 CFP 인증 요건 변경	17

서론

본 문서는 예비 및 현재 CFP 자격자에게 대한민국에서 운영되는 CFP 인증 프로그램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CFP 인증 프로그램은 재무설계 분야에서 역량, 윤리 및 실무경력에 관한 높은 기준을 정의하고 장려하며, 개인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인증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고 해당 전문직에 대한 신뢰를 강화합니다.

대한민국의 CFP 인증 프로그램은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Ltd. (FPSB International)가 공표한 글로벌 기준에 따라 FPSB International Korea Co., Ltd. (FPSB International Korea)가 관리 합니다. 대한민국에 맞게 현지화 된 FPSB International 의 CFP 인증 요건을 충족한 개인만이 FPSB International Korea로부터 CFP 상표 사용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CFP 상표(Marks)

CFP®, CERTIFIED FINANCIAL PLANNER™, 및  관련 상표(이하 “CFP 상표(Marks)”)는 엄격한 역량 기준, 윤리 기준 및 실무경력 기준을 충족한 개인에게 부여됩니다. CFP 상표(Marks) 사용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CFP 자격자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참여를 통한 지속 역량 요건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갱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 CFP 상표(Marks)는 공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인 FPSB International 이 소유합니다. FPSB International 은 개인 재무설계 분야의 전 세계 전문 기준을 수립, 유지 및 촉진하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 외 지역에서 인증,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을 관리, 개발 및 운영합니다.

CFP 상표(Marks)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재무설계 자격입니다. 대학이나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명칭과 달리, CFP 인증은 공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수립된 기준에 기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재정적 미래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역량과 윤리적 행동에 대한 의지를 입증한 재무설계 자격자의 서비스를 찾고 있습니다.

1 CFP 인증

최초 CFP 인증 절차는 국제적으로 '4E'(Education(교육), Examination(시험), Experience(경험) 및 Ethics(윤리)로 알려진 네 가지 범주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CFP 상표(Marks) 사용 인증을 받기 위해 개인은 다음 영역에서 FPSB International Korea 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 CFP 자격 후보자는 FPSB International Korea 가 승인한 CFP 종합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개인 재무설계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지식을 숙지해야 합니다.

시험: CFP 자격 후보자는 실제 고객 상황에 통합 재무설계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종합 CFP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경력: CFP 자격 후보자는 CFP 인증이 부여되기 전에 개인 재무설계 지식뿐 아니라 재무 상담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 재무설계 과정과 관련된 최소 3 년의 실무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윤리: 인증의 최종 단계로서 CFP 인증 후보자는 공중 및 고객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정의하는 윤리 및 전문 책임 강령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CFP 자격자는 자신의 전문적 또는 사업상 행위와 관련된 불만, 조사, 법적 절차 또는 기타 유사한 사건을 공개해야 하며, 특히 공정하고 성실하며 청렴하게 행동하고 고객의 필요에 기반한 객관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참고로, 후보자는 CFP 인증 신청이 FPSB International Korea 의 승인을 받고 CFP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CFP 상표(Marks)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승인 교육 프로그램

FPSB International Korea 의 CFP 인증 교육 요건은 CERTIFIED FINANCIAL PLANNER 자격자가 개인 재무설계의 전문 실무에 필요한 폭넓은 지식, 원칙 및 이론을 숙지하도록 보장합니다.

FPSB International Korea 가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은 FPSB International 의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현지화된 교육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식 체계에는 다음 지식 영역이 포함됩니다.

- 재무설계 원칙, 절차 및 기술

- 재무관리
- 세무설계
- 투자설계 및 자산관리(부동산 포함)
- 위험관리 및 보험설계
- 은퇴설계
- 상속설계 및 부의 이전
- 재무설계 심리학(2027 년부터 CFP 종합교육과정에 반영)
- 통합 재무설계

재무설계 (CFP 교육프로그램) 교육 면제

대한민국에 소재한 면허 또는 인증 기관이 발급한 다음 면허 또는 자격 중 하나를 보유한 개인, 또는 대한민국의 인가된 대학 수준 교육기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개인은 CFP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면제 대상 전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회계사(CPA) – 등록 공인회계사
-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 자격 보유자
- 변호사 자격 보유자
- 세무사 자격 보유자 및 자격시험 합격자
- 경영학 박사 학위 보유자
- 경제학 박사 학위 보유자
- 재무설계학 박사 학위 보유자

교육 면제를 인정받기 위해 개인은 관련 인증서, 등록증 또는 인증·면허 기관이나 박사 학위 과정에서 발급한 확인서 사본을 FPSB International Korea 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는 CFP 종합 교육 프로그램에만 적용되며, 면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는 CFP 자격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등록증 또는 확인서는 CFP 자격시험 등록 전 3 개월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며, (i) 해당 개인의 면허, 학위 또는 자격이 현재 유효함, (ii) 해당 개인이 결격사유 없이 양호한 상태에 있음, (iii) 해당 개인이 어떠한 조사 또는 제재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1.2 CFP 자격 시험

CFP 자격 시험은 후보자가 실제 개인 재무설계 상황에 자신의 지식, 기술 및 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후보자는 개인 재무설계를 유능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합니다.

CFP 자격 시험은 시험의 무결성, 보안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전문 자격 시험에 대한 업계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엄격한 시험 관리 요건에 따라 FPSB International Korea 가 온라인으로 시행합니다.

1.2.1 자격 시험 응시 요건

CFP 시험에 응시하려면 후보자는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온라인 시험 등록을 마친 후, 해당 시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2.2 시험 형식

비공개 자료 시험은 한 세션으로 진행되며, 일반 재무설계 지식을 평가하는 지식 기반 섹션과 해당 지식을 고객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사례 연구 섹션의 두 객관식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시험은 한국 재무설계 산업에 맞게 현지화된 FPSB International 의 글로벌 기준에 명시된 CFP 자격자에게 기대되는 기술 및 응용 지식 수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형식은 FPSB International Korea 가 CFP 자격자에게 기대되는 문제인식 및 해결적 사고, 정보 분석 및 종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험 시행 규칙을 포함한 추가 정보는 CFP Examination Guide(2026 년 7 월 발간 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3 시험 결과

FPSB International Korea 는 시험일로부터 21 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시험 결과를 통지하고 시험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시험 보고서에는 숫자 점수가 포함되지 않으며, 후보자의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만 표시됩니다.

CFP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CFP 인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는 모든 추가 인증 요건을 충족한 후 아래 신청 절차 섹션에 설명된 바와 같이 CFP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1.2.4 시험 취소 정책

후보자는 시험 응시원서 접수 완료(결제) 후 7 일 이내에 시험 등록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응급상황, 병역 소집, 직계 가족의 사망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 인정되는 생활상의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다음 시험 주기로 시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요청에는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사안별로 검토됩니다.

1.2.5 CFP 자격시험 유효기간 제한

CFP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자는 CFP 시험 합격일로부터 5 년 이내에 모든 인증 요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험 합격 후 5 년 이내에 CFP 인증을 취득하지 못했으나 계속 인증을 받고자 하는 후보자는 당시 시행 중인 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1.3 CFP 인증을 위한 실무 경력 요건

1.3.1 일반 원칙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전문 지식을 직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숙련된 재무설계 자격자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이에 따라 FPSB International Korea 는 CFP 자격 후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개인 재무설계 관련 직무에서 근무한 경력을 요구합니다.

1.3.2 실무 경력 요건

CFP®인증을 위한 경력 요건은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CFP 인증을 위한 관련 실무 경력

CFP 인증 후보자는 다음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또는 고객을 위해 일한 관련 실무 경력을 입증합니다.

- FPSB International 의 글로벌 재무설계 기준(재무설계 실무 기준)에 설명된 재무설계 절차를 포함하는 업무 활동 수행
- FPSB International 의 글로벌 재무설계 기준(재무설계사 능력 및 재무설계사 전문 기술)에 설명된 능력과 기술 입증
- FPSB International 의 글로벌 재무설계 기준(재무설계사 윤리 및 전문 책임 강령)에 설명된 윤리 원칙 준수

관련 실무 경력의 인정 기간

관련 실무 경력은 CFP 자격 시험일로부터 과거 10 년, 합격후 5 년 안에 취득한 재무설계관련 3 년의 경력을 인정합니다.

CFP 자격 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실무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는 시험일로부터 5 년 안에 필요한 경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CFP 자격 시험 응시 후 5 년 이내에 실무 경력 요건을 완료하지 못하면 후보자는 최신 CFP 자격 시험에 다시 신청하고 응시해야 합니다.

경력 기간 요건

신청자는 관련성 및 관련 실무 경력 인정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3 년의 전일제 실무를 완료함으로써 실무 경력 요건을 충족합니다. 전일제 실무란 주당 최소 40 시간 또는 연간 2,000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제 경력은 요건 충족을 위해 비례 배분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력은 경력 기록 제출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무 경력 증명서

CFP 인증 신청 시 후보자는 실무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록에는 후보자와 고용주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 경력 증명서는 관련 실무 경력, 근무 기간, 각 직무 또는 활동이 FPSB International 의 6 단계 재무설계 절차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경력 기간 중 직장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근무지에서 실무 경력을 계속 입증할 수 있도록 이전 고용주로부터 받은 실무 경력 증명서를 보관하는 것은 후보자의 책임입니다.

실무 경력 검증

FPSB International Korea 는 인증 신청자가 제출한 실무 경력을 검토하여 실무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제출한 확인 양식 검토 또는 신청자가 제출한 실무 경력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초 제출 자료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외 지역의 실무 경력

대한민국 외 지역에서 취득한 실무 경력은 대한민국에서 인정되는 경력과 동등함을 입증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1.4 CFP®인증을 위한 윤리 요건

최초 CFP 인증의 최종 요건은 윤리 요건이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1) 신청자는 FPSB International Korea 윤리 및 전문 책임 강령, 전문 행위 규칙, 재무설계 실무 기준, CFP 상표(Marks)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를 동의하는 선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2) 자신의 직업적 또는 사업상 행위와 관련된 불만, 조사, 법적 절차 또는 기타 유사한 사건을 공개해야 합니다.

FPSB International Korea 의 윤리 및 전문 책임 강령을 준수함으로써 CERTIFIED FINANCIAL PLANNER 자격자는 고객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개인 재무설계를 제공하고 개인 재무설계 실무에 대한 엄격한 윤리 및 전문 기준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FPSB International Korea 의 윤리 및 전문 책임 강령, 전문 행위 규칙 및 재무설계 실무 기준은 FPSB International Korea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korea.fpsb.org,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재무설계사 윤리 및 전문 책임 강령](#)
- [CFP 자격자를 위한 모범 행위 규칙](#)
- [재무설계 실무 기준](#)

1.4.1 FPSB International Korea 의 윤리 및 전문 책임 강령

FPSB International Korea 의 윤리 강령의 여덟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 우선** –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 **청렴성** – 청렴하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객관성** – 객관적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정성** – 모든 전문적 관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합니다. 이해상충을 공개하고 관리합니다.
- **전문성** – 모범적인 전문적 행동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 **역량** – 전문 서비스를 유능하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능력, 기술 및 지식을 유지합니다.
- **비밀유지** – 모든 고객 정보의 비밀을 보호합니다.
- **성실성** – 전문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합니다.

1.4.2 재무설계 실무 기준

CERTIFIED FINANCIAL PLANNER™ 자격자가 충족해야 하는 윤리 원칙 외에도, FPSB International Korea 는 개인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때 CFP® 자격자에게 요구되는 수행 기준을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실무경력기준은 다음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고객에게 개인 재무설계 절차를 제공하는 CFP 자격자에게 기대되는 실무 수준을 설정합니다.
- 실무경력기준을 수립하고 CFP 자격자의 일관된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개인 재무설계 분야의 전문성을 발전시킵니다.
- 개인 재무설계 계약에서 CFP 자격자와 고객의 각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 개인 재무설계 절차의 가치를 높입니다.

CFP 자격자는 FPSB International Korea 의 실무 기준 외에도 모든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규제상 의무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1.5 국제 상호인정

다른 국가에서 CFP 인증을 취득하고 현재 해당 국가에서 양호한 상태로 CFP 표(Marks) 사용을 승인 받은 개인은 다음 절차를 통해 한국의 CFP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 거주 사실에 대한 인증된 증빙 제출
- 최초 인증 기관으로부터 양호한 상태 확인서 제출
- 한국의 현행 CFP 인증 시험 합격
- 한국 CFP 인증 신청 완료(필요한 선언 및 확인 포함)
- 당시 적용되는 CFP 인증 수수료 납부

2 신청 절차

2.1 신청 절차

교육, 시험 및 경력 요건이 충족되면 후보자는 CFP®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후보자는 고용주가 서명한 경력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인증 승인 전에 FPSB International Korea 가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FPSB 는 신청일로부터 4~6 주 이내에 각 신청자에게 인증 결정을 통지합니다.

신청 절차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 1) FPSB International Korea 에 온라인으로 등록합니다 (korea.fpsb.org).
- 2)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3) CFP 시험 결과, 실무 경력 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4) 윤리 선언서에 서명하고, 인증 조건에 동의하며,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를 제공합니다.
- 5) 해당 인증 [인증 수수료](#) 를 납부합니다. 해당 수수료와 [환불 정책](#) 은 FPSB International Korea 의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인증수수료 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FPSB International Korea 는 최소 6 개월 전에 통지합니다.

2.2 CFP 인증을 위한 윤리 선언 및 조건 동의

CFP 인증 신청의 일부로, 후보자는 자격 보유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현재 또는 과거 징계 이력을 공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인증의 조건으로 과거 전문 이력의 조사 및 해결 과정에서 FPSB International Korea 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신청자는 FPSB International Korea 의 재무설계 실무 기준과 윤리 및 전문 책임 강령을 준수하고, CFP 인증 징계 정책 및 절차를 수락하며, 공표된 CFP 상표(Marks) 사용 규칙 및 지침에 따라 CFP 상표(Marks)를 사용할 것에 동의하는 선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2.3 디지털 인증서 및 배지

인증이 승인되면 FPSB International Korea 는 새롭게 인증을 받은 각 개인에게 디지털 배지와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CFP 자격자의 성명
- FPSB International Korea 가 부여한 고유 인증 번호
- 인증 발급일
- 인증 만료일

새롭게 인증을 받은 개인은 디지털 배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디지털 배지와 인증서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4 시험 합격 후 CFP® 인증 신청

CFP 시험에 합격한 개인은 시험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CFP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CFP 자격 유지

CFP 자격은 전문 자격이므로, 개인은 자격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속적인 적합성, 역량 및 전문 기준에 대한 의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CFP 자격은 2년의 고정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자격을 갱신하고 CFP 상표(Marks) 사용 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면 CFP 자격자는 2년마다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1 갱신 요건

갱신을 신청하기 위해 모든 CFP 자격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1) FPSB International Korea의 재무설계 실무 기준과 윤리 및 전문 책임 강령을 준수하고, CFP 인증 징계 정책 및 절차를 수락하며, 공표된 마크 사용 규칙 및 지침에 따라 CFP 상표(Marks)를 사용할 것에 동의 선언서에 서명합니다.
- 2) 마지막 갱신 이후 발생한 관련 징계 이력을 공개합니다.
- 3) 재무설계 활동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능력, 기술, 지식 및 전문적 행동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한 학습 활동에 참여했음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성 개발 의무를 이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된 기준은 다음 문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재무설계사 역량 프로파일(Financial Planner Competency Profile)
 - 윤리강령 및 자격자 책임 규정(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재무설계 실무기준(Financial Planning Practice Standards)

FPSB International Korea가 모든 갱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CFP 자격자는 자격 갱신을 승인 받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3.1.1 계속교육(CE) 시간

CFP 자격자는 재무설계 핵심 실무 중 하나 이상에서 계속교육 30 학점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되는 계속교육 중 중 최소 2시간은 윤리 및 전문 책임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FPSB International의 글로벌 기준에 따라 CFP 자격자들은 윤리 및 전문직 책임과 관련된 계속교육을 최소 3시간, 그리고 재무 설계 심리학과 관련된 계속교육을 최소 2시간을 이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 두 분야 모두에서 각각 최소 1학점 이상은 FPSB International이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해야 합니다.

계속교육은 세미나, 웨비나, 사내 교육, 기사 또는 도서 집필 및 기타 교육 기회 등 다양한 출처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 3자 계속교육 제공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의 사전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FPSB International Korea는 승인된 프로그램과 계속교육 학점을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FPSB 인터내셔널 코리아의 계속교육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FP 자격 계속교육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계속교육 30 학점은 모두 인증 보유자의 마지막 갱신일 또는 최초 인증일 이후 2년 기간 내에 취득해야 합니다. 계속교육 학점은 해당 2년 인증 기간에서 다음 2년 인증 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3.2 갱신 절차

CFP 자격자는 갱신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후 업데이트된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FPSB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었고 모든 일정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 요건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CFP 자격자가 인증 만료 전에 갱신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아래에 설명된 대로 인증을 복원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절차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 1) FPSB International Korea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 2)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3) 계속교육학점을 보고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4) 윤리 선언서에 서명하고, 인증 조건에 동의하며,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를 제공합니다.
- 5) 해당 인증 인증 수수료 를 납부합니다. 해당 수수료와 환불 정책 은 FPSB International Korea 의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인증수수료 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FPSB International Korea 는 최소 6 개월 전에 통지합니다.

3.3 인증 갱신 실패

CFP 자격자가 해당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갱신하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충분한 계속교육증빙 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갱신 신청서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신청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FPSB International Korea 는 해당 개인에게

인증이 만료되어 더 이상 유효한 CFP 인증 보유자가 아니며,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회복 절차를 완료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자격을 기한 내에 갱신하지 못한 개인은 CFP 상표(Marks)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CFP 자격자 등록부에서 제외 됩니다.

3.3.1 자격회복

CFP 자격이 만료된 후 이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FPSB International Korea 에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자격회복 신청일에 유효한 CFP 인증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증 만료에 따른 공백기간이 5 년 미만인 경우의 자격 회복

인증 만료에 따른 공백기간이 6 개월 이상 5 년 이하의 경우, CFP 자격을 회복하려면 개인은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관련되어 있는 모든 관련 징계 이력을 공개합니다.
- 재무설계 실무 기준의 지속적 준수, 윤리 및 전문 책임 강령 준수에 대한 지속적 동의, CFP 인증 징계 정책 및 절차 수락, 공표된 마크 사용 규칙 및 지침에 따른 CFP 상표(Marks)사용 동의를 확인하는 자격회복 선언서에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 만료 후 공백 기간 동안 CFP 상표(Marks)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선언서에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 FPSB International Korea 의 계속교육 요건을 충족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만료 후 6 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공백기간의 경우, 최소 1 시간의 전문 윤리 교육을 포함한 총 15 시간의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1 년 초과 5 년 이하의 공백의 경우, 최소 2 시간의 전문 윤리교육을 포함한 총 30 시간의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 모든 시간은 자격회복 신청 전 2 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2027 년 1 월 1 일부터 FPSB International 의 글로벌 기준에 따라 CFP 자격자들은 윤리 및 전문직 책임과 관련된 계속교육을 최소 3 시간, 그리고 재무 설계 심리학과 관련된 계속교육을 최소 2 시간을 이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 두 분야에서 각각 최소 1 학점 이상은 FPSB International 이 제공 하는 과정을 취득해야 합니다.
 - 적용되는 인증 수수료 및 자격 회복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자격 유효기간 경과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격 회복 수수료는 증가합니다. 인증 수수료 및 자격 회복 수수료는 FPSB International Korea 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해당 웹사이트에는 환불 정책도 함께 공지됩니다.

FPSB International Korea 는 수수료 구조에 변경이 있을 경우 최소 6 개월 전에 이를 공지합니다.

만료 후 공백기간이 5 년 초과인 경우 자격회복

만료 후, 공백기간이 5 년을 초과한 경우 , CFP 자격을 회복하려면 자격 회복을 신청하는 하는 시점에 유효한 자격 인증 요건인 시험, 실무경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CFP 자격자로 인증 받은 적이 있는 개인은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자격이 만료된 후 공백 기간 동안 CFP 상표(Marks)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선언서에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3.2 자격 휴면 제도

CFP 자격자가 인정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인증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최대 3 년 동안 ‘자격 휴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휴면 기간 동안 CFP 자격자는 감액된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고 완화된 계속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FP 상표(Marks)를 사용하거나 자신을 CFP 자격자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승인된 자격휴면 기간은 , 해당 개인이 인증을 보유하지 않는 기간이 5 년을 초과 한 후 CFP 자격 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하는 지를 판단하는 목적상, 인증 공백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자격 휴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 의료/장애 휴직
- 군 복무
- 고용 중단

4 징계 절차

FPSB International Korea 는 CFP 자격자가 FPSB International Korea 의 윤리 및 전문 책임 강령, 전문 행위 규칙 또는 재무설계 실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 해당 CFP 자격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또는 규제 기관이 수행하는 관련 조사나 질의가 있는 경우, 절차 개시는 그 완료를 전제로 합니다.

징계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CFP 자격자에게는 해당 절차에 대한 통지가 제공되며, 혐의에 대해 답변하고 방어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FPSB International Korea 의 징계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여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명령 중 하나 이상을 내릴 수 있습니다.

- 1) 대상자의 인증을 종료하고 해당 대상자가 더 이상 CFP 자격자가 아니도록 하는 명령
- 2) 해당 개인의 인증을 2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지하는 명령
- 3) 대상자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견책하거나 문책하는 명령
- 4)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서화된 비용에 대해 KRW7,500,000 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FPSB International Korea 에 상환하도록 하는 명령

징계위원회 명령의 대상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항소 사유를 명시하여 결정일로부터 21 일 이내에 FPSB International Korea 에 항소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증 정지 후 자격 회복

FPSB International Korea 의 징계 절차를 통해 CFP 인증이 정지된 개인은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자격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은 위에서 설명한 자격 회복 절차의 기타 모든 요건 외에도 정지 명령의 모든 요건(있는 경우)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차별 금지

FPSB International Korea 는 모든 잠재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지지하며, 신청 절차에서 모든 후보자가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6 인증 결정에 대한 불만 및 항소

개인은 FPSB International Korea 의 인증 정책, 재인증 요건 또는 인증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FPSB International Korea 는 정책, 요건 및 결정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설계된 확립된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 및 불만을 검토합니다.

이의 제기 또는 불만은 info@korea.fpsb.org 로 서면 제출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정책, 요건 또는 결정과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판단 오류 주장 또는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럽다고 주장하는 사유가 포함됩니다.

CFP 인증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FPSB International Korea 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결정 사유를 명시합니다. 거절된 신청에 대해 항소하려는 신청자는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FPSB International Korea 에 서면 항소를 제출하고 항소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FPSB International Korea 는 모든 이의 제기, 불만 또는 항소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발행하며, 그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7 CFP 인증 요건 변경

FPSB International Korea 는 CFP 인증 또는 재인증 요건의 변경 사항이 시행되기 전에 신청자, 시험 후보자, 교육기관, CFP 자격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이를 통지하며, CFP 인증 취득 또는 유지 요건의 변경 사항을 시행 최소 6 개월 전에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공지는 일반적으로 다음 채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FPSB International Korea 뉴스레터
- FPSB International Korea 웹사이트
- 등록된 CFP 자격자가 FPSB International Korea 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직접 발송되는 이메일